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4. 25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343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4. 12. 강남구청장(세무관리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4. 25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정찬식)

가. 제안이유

-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소액체납액 기준을 상향하였으므로 동일하게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고지서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고지서 1매당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(안 제4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

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 ① (생략)

4.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
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
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
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○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2. 23. ~ 2024. 3. 14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3) 기획예산과(규제심사) : 해당사항없음

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원안동의

5) 가족정책과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본 안건은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기준을 상향
하여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을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임.

○ 2024. 1. 1. 시행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 개정사
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- 개정 전의 규정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바 45만원 미
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제1항 중 일반우편의 송달대상을 1매당 세액이
‘30만원 미만’을 ‘45만원 미만’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바 개정된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제4항의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인 45

만원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. 개정시에는 2023년 기준 3만3천 건이 증가하고 약 6천8백만원의 우편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.

○ 개정에 따른 우편비용 절감예상: 6천8백만원

('23년 재산세 기준)			
구 분	발송건수	일반우편비용	비 고
30만원 미만	108,301건	46,569,430	일반우편 건당 430원/ 등기우편 건당 2,500원 2,070*32,996건 = 68,307,720원
45만원 미만	141,297건	60,757,710	

○ 본 조례안은 일반우편 송달의 대상을 현재 ‘30만원 미만’에서 ‘45만원 미만’으로 확대하려는 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보여짐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 중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<u>30만원</u>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45만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1항의 ‘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’에 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세무관리과 지방세무주사보 이제철(02-3423-5602)